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 강화 및 기후보험 도입 등〉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92호)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95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40호)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16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80호)

2026. 7.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1. 임이자의원안	2
2. 차지호의원안	5
3. 김소희의원안	9
4. 조지연의원안	10
5. 탄소중립기본법 김소희의원안	12
III . 검토의견	13
1. 총 괄	13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1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19
다. 해외의 기후위기 적응법 사례	20
라.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22
2. 조문별 검토의견	26
가. 제명	26

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27
다.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39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마.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45
바.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52
사.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정보 활용 등 ...	62
아. 기후회복력 증진 시책	69
자. 보칙	105
차. 부칙	115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2일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5년 9월 4일 차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6년 2월 3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6년 2월 10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5년 12월 14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임의자의원안

제안이유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취약성”, “회복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하여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토대로 한 기후위험평가를 통하여 기후위기 적응 추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기

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9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험지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 마련을 위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여 적응역량과 기후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후위기적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제2항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대상이 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들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마. 기후위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바. 우리나라의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 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의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수집·관리 및 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기후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자.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향상시키며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지표, 기후위기 적응진척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보활용 및 평가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2. 차지 호의원 안

제안이유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고 폭염·홍수·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져 생명, 건강, 산업, 생태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음.

우리나라도 작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25.6℃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 초대형 산불 등 이상 기후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인명과 재산, 농산물, 수산업 등 사회·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한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포

괄적 내용만으로는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적응정책을 수립·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잡·다양하게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예측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적응주류화와 적응성과·진척도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며, 적응책임관 지정으로 대책 추진의 이행력과 책임감을 확보하고, 지역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적응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현장 맞춤형 실행체계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후위기적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제2항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대상이 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에 대한 사항과 정보주체들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마.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바. 우리나라의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 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의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기후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향상시키며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기후위기 적응진척도,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을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카.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와 지방 적응대책 수립·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적응대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응 책임관을 지정토록 하고, 적응 광역협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보활용 및 평가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3. 김소희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예측·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활용, 성과·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4. 조지연의원안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

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5. 탄소중립기본법 김소희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 괄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이상기후”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후위기 관련 개념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사항이 행정계획 수립·시행 시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이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 생산, 관리, 보급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1)에 따른 정보

관리체계가 실제로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체계 및 제정법안 비교]

구분	감시·예측	기후영향 평가	취약성 평가	기후위험 평가	정부정책 및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회복력 증진	정보활용
현행	탄소법 제37조 제1항	법적근거 x			-	포괄적 규정 (42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x
		모티브 (MOTIVE) ¹⁾	베스탑 (VESTAP) ²⁾	-			
제정안	탄소법 인용	방법론 개발 등 구체화			· 행정계획에의 기후 위기 적응 주류화 평가 ·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 지정 · 기후위기 적응 공역 협의회 구성·운영	· 기후위험 평가결과 기반 대응사업 수립 · 취약계층 지원	통합플랫폼 기후위험지도 적응지표

주1) "모티브 (MOTIVE)"는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of climate change의 약자로, 건강, 물관리, 농업, 생태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모형임

주2) "베스탑 (VESTAP)"은 Vulnerability Evaluation System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의 약자로,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건강, 국토, 농축산 등 다양한 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도구임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과 이상 기후·극한기후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38조²⁾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동법 제39조³⁾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에 있어, 기후 위험평가와 기후위기 영향 조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보완하고, 기후위험지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동법 제42조⁴⁾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예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예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부문별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의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예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동 제정안은 기후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관련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 회복력 증진, 적응정보 공개 및 활용 등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사항과 정부정책 및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구 분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2216540)	조지연의원안
입법 취지와 배경		○ (입법 취지)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후위기 관련 개념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구체화하고, 기후보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시행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 (입법 배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제명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감사·예측	○ (안 제7조제2항) 적응정보 생산시 기본법 제37조1항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활용			
	취약성 조사·분석	○ (안 제8조) 부문·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산업단지 및 공공기관의 시설·서비스 등 조사·분석			
	기후 위험 평가	○ (안 제9조) 기후위험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5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적응대책에 반영 국토계획, 중·장기 행정계획 등에 반영 기본법 제42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반영	○ (안 제9조) 기후위험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5년) 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 공개시 종합평가서 1년 이내 작성·갱신 임이자의원안 +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안 제9조) 기후위험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5년) 임이자의원안 + 차지호·김소희의원안	

구	분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2216540)	조지연의원안
	기후 위기 적응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운영	○ (안 제10조) 적응정보의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 등을 통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이를 위한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원 설치 등	○ (안 제10조) 적응정보의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 등을 통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이를 위한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센터 지정 등		
	기후 위기 적응 정보 활용 등	○ (안 제11조)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및 활용 ○ (안 제12조)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등			
	기후 위기 적응 지표 및 평가 등	○ (안 제13조) 국가의 기후적응에 대한 측정 가능한 적응지표 개발·보급, 적응지표에 따라 2년마다 적응성과·진척도 점검·평가 등			
	기후 위기 적응 주류화	-	○ (안 제14조) 행정계획 수립 시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사항이 주류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적응 주류화 평가 실시		○ (안 제14조) 행정계획 수립 시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사항이 주류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기본계획, 시·도 계획, 시·군·구계획 관련 중·장기 행정계획 등에 대한 적응 주류화 평가 실시
	기후 회복력 증진	○ (안 제14조) 지자체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기본법 제42조의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반영	○ (안 제15조) 지자체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개정안 제16조의 취약지원사업에 반영		○ (안 제15조) 차지호·김소희 의원안 + 기본법 제40조의 지방기후위기적응 대책에 결과 반영
		-	○ (안 제16조) 지자체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	○ (안 제18조)	○ (안 제17조)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적응 <u>광역협의회</u> 운영			

구 분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2216540)	조지연의원안
		○ (안 제15조) 정부 또는 지자체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하도록 관련 보험 개발·보급 노력 명시	○ (안 제19조) 정부 또는 지자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개발·보급 노력 명시	○ (안 제18조~제20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개발·보급 노력 명시 정부의 기후보험 운영의무 규정 신설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안 제18조) 정부 또는 지자체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 개발·활성화 노력 명시 정부 또는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 마련
		-	-	-	○ (안 제19조)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 (안 제16조) 기업의 기후공시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지원	○ (안 제20조) 기업의 기후공시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 대응력 강화 사업 지원	○ (안 제21조)	○ (안 제20조)
	기타	○ (안 제17조~제21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등	○ (안 제21조~제26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등	○ (안 제22조~제27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등	○ (안 제21조~제27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u>교육·홍보</u> ,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등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크게 총칙,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기후위험 평가, 기후 회복력 증진 시책 및 보칙 성격을 가진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이자의원안은 총 21조, 차지호의원안은 총 26조, 김소희의원안·조지연의원안은 총 27조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구성체계]

구 분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2216540)	조지연의원안
총 칙	• 목적 (§1) • 정의 (§2) • 기본원칙 (§3)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4) •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 목적 (§1) • 정의 (§2) • 기본원칙 (§3)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4) •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 목적 (§1) • 정의 (§2) • 기본원칙 (§3)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4) •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 목적 (§1) • 정의 (§2) • 기본원칙 (§3)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4) •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기후위험 평가	•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7) •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분석 등 (§8) • 기후위험 평가 (§9) •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10) •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11)	•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7) •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분석 등 (§8) • 기후위험 평가 (§9) •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10) •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11)	•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7) •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분석 등 (§8) • 기후위험 평가 (§9) •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10) •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11)	•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7) •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분석 등 (§8) • 기후위험 평가 (§9) •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10) •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11)
기후 회복력 증진 시책 등	•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12) • 기후위기 적응표지 및 적응상징제도 평가 (§13) -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14) - - - - • 기후보험 (§15) - • 기후공시 지원 (§16)	•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12) • 기후위기 적응표지 및 적응상징제도 평가 (§13) •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추진 (§14)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15) •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16) •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의 지정 (§17) •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운영 (§18) • 기후보험 (§19) - •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20)	•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12) • 기후위기 적응표지 및 적응상징제도 평가 (§13) •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추진 (§14)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15) •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16) - - • 기후보험 (§18) • 기후보험의 운영 (§19) •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0) - •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21)	•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12) • 기후위기 적응표지 및 적응상징제도 평가 (§13) •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추진 (§14)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15) •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16) - - • 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18) •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19) •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20)
보 칙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17) - •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18) • 전문인력의 양성 (§19) - • 재정지원 등 (§20) • 권한의 위임 (§21)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17) - •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22) • 전문인력의 양성 (§23)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4) • 재정지원 등 (§25) • 권한의 위임 (§26)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17) - •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23) • 전문인력의 양성 (§24)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5) • 재정지원 등 (§26) • 권한의 위임 (§27)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17) - •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23) • 전문인력의 양성 (§24)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5) • 재정지원 등 (§26) • 권한의 위임 (§27)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 시행일 (공포 후 1년) • 다른 법률의 개정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법으로 규정 삭제)	• 시행일 (공포 후 1년) -	• 시행일 (공포 후 1년) • 다른 법률의 개정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법으로 규정 삭제)

다. 해외의 기후위기 적응법 사례

일본 및 독일의 경우에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기후위기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적응법을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동 법률에는 기후변화적응계획, 기후변화 적응의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에도 2024년 7월 1일부터 연방기후변화적응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의 부정적 측면이 생명과 건강, 사회문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방에 의한 기후위험분석 및 적응전략 수립과 주정부에 의한 기후변화적응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일본과 독일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일본	독일
법률명	· 기후변화 적응법 (‘18.12.1. 시행)	· 연방 기후변화적응법 (‘24.7.1. 시행)
제정 목적	- 완화와 적응은 목적 및 주요 정책이 상이 - 기후위기 피해가 점차 확대되므로 별도 법률 제정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 사회문화, 경제의 별도 보호법익의 마련을 위해 제정
주요 내용	- 기후변화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 - 기후영향평가보고서 작성(5년) 및 공표 - 적응성과 파악, 평가기법 개발	- 기후위험 분석·결과 발표(10년) - 기후변화결과 모니터링보고서(4년) - 측정가능한 목표를 포함한 적응전략 수립
조문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노력) 제6조(국민의 노력) 제2장 기후변화적응 계획 제7조(기후변화적응 계획의 책정) 제8조(기후변화적응 계획의 변경) 제9조(평가방법 등의 개발) 제10조(기후변화 영향의 평가) 제3장 기후변화적응의 추진 제11조(연구소의 기후변화적응 추진에 관한 업무) 제12조(지역 기후변화적응 계획) 제13조(지역 기후변화적응센터) 제14조(기후변화적응광역협의회) 제15조(관련 시책과의 연계) 제4장 보칙 제16조(관측 등의 추진) 제17조(사업자 및 국민의 이해 추진) 제18조(국제 협력 추진) 제19조(국가의 원조) 제20조(관련 행정기관 등의 협력) 부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법의 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연방에 의한 기후변화 적응 제3조(사전 예방적 기후변화적응전략) 제4조(기후위험분석: 정보수집) 제5조(감시 목표 미달성 시 재조정) 제6조(연방차원에서의 기후변화적응) 제7조(연방자산(국유지)의 기후변화에의 적응) 제3장 고려요건 제8조(고려요건) 제4장 주의 기후변화적응 제9조(연방과 주의 협력) 제10조(주의 기후변화적응) 제11조(주의 보고) 제12조(기후변화적응계획) 제5장 종결규정 제13조(종결규정) 제14조(효력의 개시) 부칙

라.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응대책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후위험의 관리와 사회적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농업, 수산업,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기후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의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정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더해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촉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후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중 정의, 기본원칙, 책무 뿐만 아니라 동법 제6장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과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내용을 제정안으로 이관하여 중복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할 필요⁵⁾가 있음.

[기본법상 기후위기 적응시책 관련 사항 및 이관 필요성]

조항	주요내용	이관 필요성
제37조(기후위기의 감사·예측)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일부 이관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등 (2026.11.12. 시행)	전부 이관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5년 주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전부 이관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매년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점검 및 공개, 개선사항의 정책에 반영 등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5년주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기후부장관에 보고 등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5년 주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이행실적 작성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 제출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취약지역 및 계층을 위한 지역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 등	전부 이관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깨끗한 물공급, 수생태계 보전 등 물 관련 시책의 수립·마련 등	기본법 존치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국토종합계획 등 주요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의 반영 등	기본법 존치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농림수산 분야의 전환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등	기본법 존치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적응센터 지정 등	전부 이관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 등 (2026.5.12. 시행)	일부 이관

5)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한, 4개의 제정안 모두 장(章) 구분 없이 조문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법률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률의 체계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한 내용을 장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유사 조항을 이관하고 장(章)별로 유사한 조문을 모은 제정안 체계 예시는 다음과 같음.

[장 신설 및 조문 배치(안) 예시]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 및 기후위험 평가	제7조(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제8조(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제9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제10조(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제11조(기후위험 평가) 제12조(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제3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본법 이관	제13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14조(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5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16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17조(기후위기 적응지표, 적응성과 및 진척도 평가 등) 제18조(기후위기 적응 확산)

장	조문
제4장 기후회복력 증진	제19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제20조(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제21조(기후보험) 제22조(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3조(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제24조(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제5장 보칙	제25조(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제26조(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운영) 제27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기본법 이관 제28조(기후위기 적응 교육·홍보) 제29조(기후위기 적응 관련 연구·개발)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32조(재정지원) 제3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34조(권한의 위임)

2. 조문별 검토의견

가. 제명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의원안은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차지호의원안은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의원안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조지연의원안은 ‘기후 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정하고 있음.

이 중 제정안의 내용을 가장 폭넓게 포섭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적절해 보이나, 동 제정안은 기본법의 예외·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실행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임.

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1조 ~ 제3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개 제정안 제1조는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예상하지 못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조문 중 ‘예상 가능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3. “기후위기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4.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4.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4.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4.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5. “기후영향”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5. “기후영향”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5. “기후영향”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5. “기후영향”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6.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7. “기후회복력”이란 기후위기 에 따른 영향 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생활·사회·경제·자연환경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말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6.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7. “기후회복력”이란 기후위기 에 따른 영향 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생활·사회·경제·자연환경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말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6.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7. “기후회복력”이란 기후위기 에 따른 영향 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생활·사회·경제·자연환경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말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6.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7. “기후회복력”이란 기후위기 에 따른 영향 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생활·사회·경제·자연환경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한다.	한다.	한다.	한다.
8.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8.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8.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8. “기후정의”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정의를 말한다.
9.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9.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의	9.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의	9.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10.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해 양 · 수 산 , 산업, 방재 등 에 미치는 영 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 적 · 경제적 파 급효과를 조사 · 평 가 하 고 ,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 · 추진하는 과정 에서 수집 · 활 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2에 따른 기후 위기 적응정보 를 말한다. 10. “이상기후” 란 「기후 · 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9 호에 따른 현 상을 말한다.	2에 따른 기후 위기 적응정보 를 말한다. 10. “이상기후” 란 「기후 · 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 9호에 따른 현상을 말한다. 11. “기후보험” 이란 기후위 기로 인해 기 후위기 취약 계층에게 발 생하는 생명 · 신체 및 경 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기	11호의2에 따 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말한다. 11. “이상기후” 란 「기후 · 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 9호에 따른 현상을 말한다.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 험을 말한다.	12. “극한기후” 란 「기후· 기후변화 감 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제 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 후를 말한다.

4개 제정안 제2조는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
위기 취약계층, 이상기후 등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탄소중립기본법
김소희의원안(2215580) 제2조는 기후보험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별 정의규정 주요 내용]

구분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조지연의원안
기후변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 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			

구분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조지연의원안
기후위험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			
기후영향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			
기후위기 적응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기후회복력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생활·사회·경제·자연환경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기후정의	-	-	-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정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			
기후위기 적응정보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	기본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		
이상기후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현상		

구분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조지연의원안
기후보험	-	-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험	-
극한기후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

다만, ‘기후위기 적응정보’ 등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법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2026.3.) 해당 조문⁶⁾을 인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임 이 자 의 원 안	차 지 호 의 원 안	김 소 회 의 원 안	조 지 연 의 원 안
제3조(기본 원칙) 기후위기 적응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 원칙) 기후위기 적응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 원칙) 기후위기 적응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 원칙) 기후위기 적응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영향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하여 취약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하며, 기후위기 적응부문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기후영향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하여 취약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하며, 기후위기 적응부문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기후영향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하여 취약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1. 기후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위험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 위기 적응시책을 추진하고, 주기적·지속적으로 진척경과를 점검·평가하여 적응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3.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 위기 적응시책을 추진하고, 주기적·지속적으로 진척경과를 점검·평가하여 적응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3.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 위기 적응시책을 추진하고, 주기적·지속적으로 진척경과를 점검·평가하여 적응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2.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 위기 적응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주기적·지속적으로 적응시책의 추진 경과를 점검·평가하여 기후위기 적응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3.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에 대하여 기후정의 실현 및 기후회복력 향상 관점에서 우선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4.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에 대하여 기후정의 실현 및 기후회복력 향상 관점에서 우선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4.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에 대하여 기후정의 실현 및 기후회복력 향상 관점에서 우선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3.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에 대하여 기후정의 실현 및 기후회복력 향상 관점에서 우선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4.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5.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5.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4.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모든 정책·시책에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역별·분야별 적응 정책간의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모든 정책·시책에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역별·분야별 적응 정책간의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모든 정책·시책에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역별·분야별 적응 정책간의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모든 정책·시책에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역별·분야별 적응 정책간의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4개 제정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이자의원안·조지연의원안의 경우 과학에 기초한 평가, 사전예방 시책의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지호의원안·김소희의원안의 경우 여기에 국가 전반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적응정책 간의 상호보완성·정합성 확보 규정을 추가하고 있는데, 탄소중립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안 제4조~제5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영향에 따른 장기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영향 및 장기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국가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영향에 따른 장기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영향 및 장기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국가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영향에 따른 장기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영향 및 장기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국가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영향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에 대한 장기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영향 및 장기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국가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지원·보급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약성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응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응시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성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응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응시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성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응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응시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성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응시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응시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개 제정안 제4조는 국가가 기후영향 및 장기예측 결과를 국가 기본계획과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저감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시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은 사회기반시설의 진단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별 주요 내용]

주체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국가	- 기후영향 분석 및 기후위험 장기 전망 예측 - 국가 기본계획 등에의 기후예측 결과 반영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국가지자체 공통) - 적응시책 추진현황의 주기적 점검 및 시책 수정·보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통) -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
지자체	-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적응시책 수립·이행		
공공기관	- 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 진단 및 예방 조치 강구		

4개 제정안 제5조는 국민과 사업자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위기 적응 시책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의 영향은 전방위적인 만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하여야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사업자와 국민도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책무 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⁷⁾가 있음.

7) ① (안 제4조제3항) 기후위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양성하여야 한다.

② (안 제5조)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적응정보 구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개 제정안 제6조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안 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적응정보 구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을 따름	-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인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을 따름	-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인용한 조사 및 평가,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을 따름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시책 등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특별법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일부 기후위기 적응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본법 상 기후위기 적응시책 관련 사항 및 이관 필요성]

조항	주요내용	이관 필요성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일부 이관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등 (2026.11.12. 시행)	전부 이관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5년 주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전부 이관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매년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점검 및 공개, 개선사항의 정책에 반영 등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5년주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기후부장관에 보고 등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5년 주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이행실적 작성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 제출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취약지역 및 계층을 위한 지역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 등	전부 이관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깨끗한 물공급, 수생태계 보전 등 물 관련 시책의 수립·마련 등	기본법 존치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국토종합계획 등 주요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의 반영 등	기본법 존치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농림수산 분야의 전환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등	기본법 존치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적응센터 지정 등	전부 이관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 등 (2026.5.12. 시행)	일부 이관

마.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안 제7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7조(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제2조제9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적응정보”라 한다)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제7조(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적응정보”라 한다)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제7조(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적응정보”라 한다)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제7조(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적응정보”라 한다)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사항에 대한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	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	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 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에 대한 생태계·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등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의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 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에 대한 생태계·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등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의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 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에 대한 생태계·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등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의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적응정보 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에 대한 생태계·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등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취약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응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응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통합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응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각종 정보 및	비스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응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각종 정보 및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정보의 생산·수집 및 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정보의 수집·생산 및 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를 통합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정보의 수집·생산 및 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를 통합 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정보의 수집·생산 및 관리·활용,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개 제정안 제7조는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을 위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주체별 역할, 협의체 운영 등 적응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별 주요 내용 및 차이는 다음과 같음.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기후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생산.관리.활용	-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생산.관리.활용 (제1항)		
-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정보 연계.활용(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 의무 규정	- 기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청 근거 마련(제3항)		
- 지자체의 협력 의무 규정: 관할 지역 기후위기 적응정보 현황.통계를 매년 작성.제출(제4항)			
- 기본법에 따른 취약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규정(제5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제6항)			
- 기후부장관에게 각종 정보 통합관리 및 매년 결과 공개 의무 부여(제7항)			

구체적으로, 정부 또는 기후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응정보와 통계의 분석·검증 및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등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안 제7조제1항의 주체를 “정부”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자세한 운영 방식은 추후 규정할 예정이므로 지자체의 자료제출 및 기후부의 결과 공개주기 ‘매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바.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안 제8조~제9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8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①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 및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①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 및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① 정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과학적 방법론 및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기후영향 및 기후위기 취약성(이하 “기후영향 및 취약성”이라 한다)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1.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1.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1.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2.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2.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2.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2.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업단지 4. 그 밖에 적응 정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등 취약실태 조사·분석 방법,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단지 4. 그 밖에 적응 정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등 취약실태 조사·분석 방법,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큰 산업단지 4. 그 밖에 적응 정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등 취약실태 조사·분석 방법,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단지 4. 그 밖에 적응 정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방법,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개 제정안 제8조는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 및 연구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 정부는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과학적 방법론 및 연구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 정부는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 조사대상: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단지			

이러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를 통해 지역과 부문별 여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상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9조(기후위험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	제9조(기후위험평가) ① 정부는 제8조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	제9조(기후위험평가) ① 정부는 제8조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	제9조(기후위험평가) ① 정부는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

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인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자료 등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과를 기반으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험을 평가하고 기후위험 종합평가 보고서(이하 “종합평가서”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반으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부문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반으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부문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과를 기반으로 부문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이하 “종합평가서”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 공개시 종합평가서를 1년 이내에 작성·갱신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이하 “종합평가서”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 공개시 종합평가서를 1년 이내에 작성·갱신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이하 “종합평가서”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③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③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③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장, 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장, 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	장, 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	장, 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계획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계획,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립하는 경우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	④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및 취약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 2.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 2.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 2.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 2.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 그 밖에 기후 위험 평가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후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종합평가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 그 밖에 기후 위험 평가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후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종합평가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 그 밖에 기후 위험 평가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후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종합평가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 그 밖에 기후 위험 평가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후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종합평가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개 제정안 제9조는 안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 또는 기후부 장관이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관련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기후부 장관이 기후위험 평가	- 정부가 부문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제1항)		
- 기후부 장관이 기후위험 종합평가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공개	- 기후부 장관이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공개 - IPCC 보고서 공개 시 종합평가서를 1년 이내 작성·갱신	- 기후부 장관이 기후위험 종합평가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공개(제2항)	
-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지방·공공기관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	- 임이자의원안 내용에 더하여, 평가결과를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시·군·구 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제3항)		
-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근거 마련(제4항)		
- 기후부 장관의 종합평가서 작성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제5항)			
- 국가·지자체는 평가결과를 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 국토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6항)			
- 국가·지자체는 기본법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 계획 수립·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제7항)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후위험 평가의 주체를 “정부”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안 제3항·제6항·제7항은 각각 평가결과를 주요 행정계획등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안 제3항에서 관련 행정계획을 병합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경우 주요 변경사항 반영, 종합평가서 작성을 위한 예산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1년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갱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이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사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정보 활용 등(안 제0조~제1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0조(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기준 및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 2.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3.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및 관련 방법론 개발 4. 제9조에 따른	제10조(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기준 및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 2.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3.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및 관련 방법론 개발 4. 제9조에 따른	제10조(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기준 및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 2.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3.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및 관련 방법론 개발 4. 제9조에 따른	제10조(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기준 및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 2.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3.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및 관련 방법론 개발 4. 제9조에 따른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 론 개발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 론 개발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 론 개발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 론 개발
5. 제11조제3항 에 따른 기후 위기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 축·운영	5. 제11조제3항 에 따른 기후 위기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 축·운영	5. 제11조제3항 에 따른 기후 위기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 축·운영	5. 제11조제3항 에 따른 기후 위기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 축·운영
6. 그 밖에 기후 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 축·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6. 그 밖에 기후 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 축·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6. 그 밖에 기후 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의 구 축·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6. 그 밖에 기후 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 축·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 른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 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위해 환경부 소속으 로 국가기후위 기 정보 관리 원 (이하 “정보관리 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 른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 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위해 국가기후위기적 응정보센터(이하 “정보관리센 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 보 관리 체계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위해 국 가기후위기정보 관리센터(이하 “정보관리센터” 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 보 관리 체계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위해 국 가기후위기적응 정보센터(이하 “정보관리센터” 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③ 제 1 항 에 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 의 구축·운영	③ 제 1 항 에 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 의 구축·운영	③ 제 1 항 에 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 의 구축·운영	③ 제 1 항 에 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 의 구축·운영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등에 관하여 필요 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 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 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 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 한다.

4개 제정안 제10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제2항의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기관을 신설하거나 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기후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①적응정보 표준 설정, ②적응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교육, ③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 사 방법론 개발, ④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론 개발, ⑤기후위기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업무 수행			
- 국가기후위기정 보관리원 신설	- 국가기후위기적응 정보센터 지정	- 국가기후위기정보 관리센터 지정	- 국가기후위기적응 정보센터 지정

한편, 동 개정사항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9)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된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
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내용이므로 차지호·조지연의원안에서는 부칙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에 규정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¹⁰⁾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제정안 간 중복 규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1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산업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①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산업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①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산업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①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산업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공동활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차지호·조지연의원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각각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통해 적응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통해 적응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	활한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통해 적응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	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통해 적응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동활용, 생산표준 설정·관리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활용, 생산표준 설정·관리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활용, 생산표준 설정·관리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활용, 생산표준 설정·관리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개 제정안 제11조는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적응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기후부장관에게 적응정보 공개·공동활용 의무 부여	- 정부에게 적응정보의 공개·공동활용 의무 부여		
- 기후부장관은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 설정·관리 가능			- 정부가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 설정·관리 가능
- 기후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통해 적응정보를 공동활용하여야 함			
-	- 기후부장관의 적응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일관된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부처별 적응정보를 통합하여 일괄 제공하고,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공동활용(적응주체별 맞춤형 정보 제공)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한편, 각 부처가 관리하는 적응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의 공개·공동활용 의무 주체(안 제1항) 및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 설정·관리 주체(안 제2항)는 “정부”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적응정보의 수집·관리는 안 제7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공개·활용은 안 제11조 등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조문 순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7조(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제7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제8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제8조~~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제9조(기후위험 평가)	~~제9조~~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제10조(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제10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제11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제11조~~ (기후위험 평가)

아. 기후회복력 증진 시책

(임이자의원안 제12조~제16조, 차지호·조지연의원안 제12조~제20조, 김소희의원안 제12조~제21조, 탄소중립기본법 김소희의원안 제47조의2~제47조의3·제81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2조(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조사·분석,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평가, 「기후·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후·기후변화감시 정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 기준 및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 기준 및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 기준 및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 기준 및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및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개 제정안 제12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 작성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부가 안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과 안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것으로, 각 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기후부 장관은 제8조·제9조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 작성			- 3개 제정안의 내용 + 제7조의 적응정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기후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험지도 작성
-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제9조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제8조·제9조 및 기후위험지도 사전 검토 필요	-

동 제정안은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동 내용을 “기후위험지도 작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 외의 시각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를 다양한 시각화 형태를 포섭할 수 있는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운영 방식은 추후 규정할 예정이므로, 공공사업 추진 시 기후위험지도를 사전에 검토한다는 내용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3조(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 향상 및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지표(이하 “적응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① 정부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 향상 및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개별지표와 상호비교가 가능한 포괄지표 등 기후위기 적응지표(이하 “적응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 향상 및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개별지표와 상호비교가 가능한 포괄지표 등 기후위기 적응지표(이하 “적응지표”라 한다)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련 지표를 고려하여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① 정부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 향상 및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개별지표와 상호비교가 가능한 포괄지표 등 기후위기 적응지표(이하 “적응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적응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적응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른 적응지표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 성과·진척도(이하 “적응성과·진척도”라 한다)를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이하 “적응성과·진척도”라 한다)를 점검·평가하고 부문별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응지표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이하 “적응성과·진척도”라 한다)를 점검·평가하고 부문별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 계획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 및 진척도(이하 “적응성과 등”이라 한다)를 점검·평가하고 부문별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 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및 적응성과·진척도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에 따른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및 적응성과·진척도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및 적응성과·진척도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에 따른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및 적응성과등의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개 제정안 제13조는 각 분야별 개별지표와 상호 비교가 가능한 포괄지표 등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과 및 진척도를 평가하고 부문별 결과를 공개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기후부가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보급	- 정부가 개발·보급	-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보급	- 정부가 개발·보급
- 기후부가 적응지표에 따른 적응성과·진척도를 2년마다 평가·공개	- 정부가 2년마다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후 부문별 결과 공개	- 정부 및 지자체가 2년마다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후 부문별 결과 공개 - 미흡한 경우 개선 계획 함께 공개	- 정부가 2년마다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후 부문별 결과 공개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의무 규정		
-	-	- 기후부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 권고 가능	-

동 제정안은 국가의 기후적응에 대한 측정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기후영향과 취약성, 적응능력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한편, 각 제정안별로 포괄지표 개발·보급 주체를 기후부(임이자의원안), 정부(차지호·조지연의원안), 정부와 지자체(김소희의원안)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적 수준에서 통일적인 포괄지표 개발을 위해 개발 주체를 “정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4조(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① 정부는 소관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기후위험을 고려하고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조	제14조(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기후위험을 고려하고 기후회복력	제14조(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① 정부는 소관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기후위기 영향 및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등을 고려하고 기후회복력을 높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치를 포함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사항이 주류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에 대한 평가(이하 “적응 주류화 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사항이 주류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에 대한 평가(이하 “적응 주류화 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사항이 주류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정계획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에 대한 평가(이하 “적응 주류화 평가”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적응 주류화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적응 주류화 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적응 주류화 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시·도계획,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녹색국토의 관리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부문·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계획 ③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적응 주류화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응 주류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대상, 절차, 방법 등 적응 주류화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응 주류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적응 주류화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대상, 절차, 방법 등 적응 주류화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응 주류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대상, 절차, 방법 등 적응 주류화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지호·김소희·조지연의원안 제14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계획 전반에서 기후적응 전략과 요소를 반영하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및 점검·진단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¹¹⁾하려는 것으로, 제정안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정부는 소관 행정계획 수립·시행시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 정부와 지자체는 소관 행정계획 수립·시행시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 정부는 소관 행정계획 수립·시행시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 기후부 장관은 매년 적응 주류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 기후부 장관은 매년 적응 주류화 평가를 실시	- 기후부 장관은 다음의 행정계획에 대해 적응 주류화 평가 실시: ·기본법의 국가기본계획의 연관 계획 ·기본법의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의 연관 계획 ·기본법의 녹색국토 관리 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의무 규정		
- 기후부 장관은 적응 주류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반영 요청 가능		
-	- 기후부 장관은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 권고 가능	-

동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사항이 개별 사업의 보조적 고려 요소가 아닌, 행정계획 전반에 기본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짐.

11) 유사입법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조치가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한편, 적응 주류화 평가 대상에 지자체 행정계획이 포함되므로 행정 계획 수립·시행시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를 촉진해야 하는 주체를 “정부와 지자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기후부 장관이 정부업무평가 반영을 누구에게 요청하는지가 법문상 불분명하므로, “해당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를 “기후위기 적응 확산”으로 순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4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이상기후·극한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피해,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5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이상기후·극한기후 등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및 피해,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제15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이상기후·극한기후 등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및 피해,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	제15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이상기후·극한기후 등이 초래하는 기후영향 및 피해,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이자의원안 제15조 및 차지호·김소희·조지연의원안 제15조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이상기후·극한기후 등이 초래하는 기후영향 및 피해,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기후부장관에게 보고	- 정부, 지자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안 제16조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에 반영		- 정부, 지자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취약지원사업, 기본법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
- 정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경비 보조 가능			
-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 규정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행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¹²⁾.

12)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가. 조사대상: 기후노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영유아가정), 옥외근로자, 1인가구 등의 사회적·생물학적 취약계층을 포함하며, 경제적 취약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환경적 취약성(쪽방 등 주택 외 거주자, 반지하 거주자, 에어컨 미보유 가구 등)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총 2,400명

나. 조사항목

기후위기 취약계층 유형 및 사회적 취약성	기후 취약계층 유무(일반)
	특정 원인 (직업환경, 취약구역 거주, 건강)
기후변화 피해	재해 경험
	사회적 고립
	경제
	건강
	정보
적응정책 수요	주거건물 적응정책 수요
	도시환경(인공, 자연) 적응정책 수요
	복지서비스 및 복지시설 적응정책 수요
적응 역할인식/인지	적응에 대한 대응주체 및 개인의 역할

한편, 4개 제정안은 모두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탄소중립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¹³⁾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이하 “취약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제1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이하 “취약지원사업”이라 한다)	제1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이하 “취약지원사업”이라 한다)을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종합평가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	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종합평가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결과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응대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대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대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지호·김소희·조지연의원안 제16조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취약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취약지원사업 수행 시 실태조사 등의 분석·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 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취약지원 사업 시행 가능		
- 취약지원사업 시 고려사항: ·안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안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종합평가 ·안 제12조에 따른 기후위험지도 ·안 제15조에 따른 취약계층실태조사 ·기본법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 정부는 취약지원사업 실시 지자체에 경비 보조 가능		

이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평가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 기후위기 특성에 맞는 취약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차지호의원안
제17조(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의 지정) ① 정부는 제7조제3항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 제8조제1항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제9조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 제11조제1항의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제13조제1항의 기후위기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4항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 제15조제1항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제16조제1항의 취약지원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항의 지방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을 지정한다.

차지호의원안

-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1항의 취약기관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지호의원안 제17조는 정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 위기 적응 업무 수행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취약기관¹⁴⁾의 경우 필요시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관·단체별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의 업무]

정부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 -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 기후위험 평가 - 기후위기 적응정보 공개·활용 -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보급 - 탄소중립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기후위기적응 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 취약지원사업 -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 탄소중립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각 기관 내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탄소중립기본법 제79조¹⁵⁾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과 기능이

14) 취약기관: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복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개요(시행령 제72조)]

구분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주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역할	- 정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과 이행현황 점검 ·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 점검 · 온실가스 관련 소관 분야의 정보·통계 작성·제출 ·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이행책임관 · 탄소중립 사도계획 또는 사군구계획 수립시행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 점검 ·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정보·통계 작성·제출 ·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추진상황의 점검 ·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8조(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제1	제17조(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제17조(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

-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항의 지방기후 위기적응대책의 효율적 수립·시행, 같은법 제38조제1항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성 제고 등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필요한 협의를 위하여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기관, 지역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 연구기관, 취약기관, 사업자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40조제1항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효율적 수립·시행, 같은법 제38조제1항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성 제고 등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필요한 협의를 위하여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기관, 지역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 연구기관, 취약기관, 사업자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	0조제1항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효율적 수립·시행, 같은법 제38조제1항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성 제고 등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필요한 협의를 위하여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기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 연구기관, 취약기관,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③ 광역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기후 적응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정보관리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자료의 제공, 의견의 개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광역협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광역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기후 적응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정보관리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에 자료의 제공, 의견의 개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광역협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광역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기후 적응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정보관리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적응센터에 자료의 제공, 의견의 개진 및 협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광역협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지호의원안 제18조 및 김소희·조지연의원안 제17조는 지방적응 대책 수립·이행의 실효성 제고, 국가와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간 연계 강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기본법에 따른 국가·지방 기후위기적응대책 간 연계성 제고 등을 위해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 구성·운영		
- 광역협의회에는 광역·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 연구기관, 취약기간,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 광역협의회는 기후부장관 또는 정보관리센터 등에 협력 요청 가능		

동 제정안은 국가·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한편, 지역별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각 지방에 설치되는 협의회의 성격을 감안할 때, 명칭을 “광역협의회”로 하기보다는 “지방협의회”로 하는 것이 법문에 부합해 보이며, 기상청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협의회에 지방기상청과 기상지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이자의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제15조(기후보험)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국 민과 기업이 기 후위기로 발생	제19조(기후보험)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국 민과 기업이 기 후위기로 인한	제18조(기후보험)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국 민과 기업이 기 후위기로 인한	제18조(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이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하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이하 “기후보험”이라 한다)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보험의 효과적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등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제19조(기후보험의 운영)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기후위	있다. ④ 정부는 기후보험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후재난 발생 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손해액 산정 및 지급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기 취약계층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 및 보험의 운영·관리 등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종류, 대상, 가입 방식,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가 관리·운영하는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기후보험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라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정부는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통합)	조지연의원안
		에 기후보험 중 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 후보험 관련 자 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 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임이자의원안 제15조, 차지호의원안 제19조, 조지연의원안 제18조, 김소희의원안 제18조~제20조 및 탄소중립기본법 김소희의원안 제47조의2~제47조의3·제81조¹⁶⁾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보험 개발 지원과 보급 노력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2건의 김소희의원안(제정안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이에 더해 기후보험의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16) 탄소중립기본법 김소희의원안 제81조는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김소희의원안 제20조제5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생략함.

[4개 제정안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의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2215580-2216540)	조지연의원안
- 재 난·사 고 에 대비할 수 있 도록 관련 보 험 개발·보급	- 재 난 또는 이 에 수반되는 피 해 에 대비하고 관련 손실 보 상을 위한 보험 개발·보급	- 재 난 또는 이 에 수반되는 피 해 에 대비하고 관련 손실 보 상을 위한 보험 개발·보급	- 재 난과 피해에 대비하여 경 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 개발·운영 - 기후보험의 효과적인 도입·확 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 손해액 산정 및 지급절차 간소 화특례,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	-	- 기후보험 운영 계획 수립·시행 - 보험운영관리비용 지원	-
-	-	-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동 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의 생활안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한편, 김소희의원안의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내용(안 제20조)이 반영되는 경우, 안 제4항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운영 계획 수립·시행의 주체는 사업집행기관이며, 기후보험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김소희의원안 제19조(기후보험의 운영) 조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국가적으로 운영 중인 기후 관련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농어업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상품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관련 위험을 보장하고 녹색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¹⁷⁾,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25년 4월부터 자체적으로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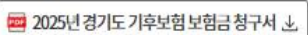
[경기 기후보험 개요]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위해 기후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보장대상	- 경기도민 모두(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도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출처: 경기기후보험(<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231&menuId=1534064>)

17) 이코리아, ‘기후변화 피해 확산, 보험상품 다양화 필요성 ↑’ 2023.9.27

• 보장내용

구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청구서류
경기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T67)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10만원	<공동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주민등록초본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온열, 한랭질환, 감염병> ◦ 공동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공동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 (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감염병 진단 시 보장 (사고당)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경기도민(4주이상 진단) 항목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30만원	
기후 취약계층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10만원	<온열, 한랭질환 입원비> ◦ 공동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의료기관 교통비> ◦ 공동서류 + 진료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긴급이후송 지원> ◦ 공동서류 + 진료확인서 + 구급차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금> ◦ 공동서류 + 초진기록지 +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확인서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확인서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 (사고당)	30만원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시	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 (10회 한도)	2만원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시설 이송업체 서비스 지원 (사고당)	50만원	
	기후재해 정신적피해(트라우마) 지원금	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 (5회 한도)	1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경기도민이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한하여 보상가능함

경기도는 일반 도민과 기후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열질환·한랭질환, 특정감염병, 기후재해(폭염, 폭우, 폭설 등)로 인한 사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

조지연의원안
제19조(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지연의원안 제19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임이자의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6조(기후공시지원) 정부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	제20조(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정부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	제21조(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정부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	제20조(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정부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가도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이자의원안 제16조, 차지호·조지연의원안 제20조 및 김소희의원안 제21조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이를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업계의 기후위험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기후공시 지원) 기업에 미치는 기후위험 산정 평가도구 개발 지원	-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기업에 미치는 기후위험 산정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자. 보칙

(임이자의원안 제17조~제21조, 차지호의원안 제21조~제26조, 김소희의원안 제22조~제27조, 조지연의원안 제21조~제27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7조(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위기 적응 교육·홍보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8조(기후영향 ·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 한 조사·연구 ·개발 등) 환 경부장관은 기 후영향·기후위 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기후 회복력 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취 약실태, 기후 위험 및 사회 적·경제적 파 급효과 조사· 분석	제22조(기후영향 ·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 한 조사·연구 ·개발 등) ① 정부는 기후영 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 위험 평가, 기후 회복력 강화 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 진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취 약실태, 기후 위험 및 사회 적·경제적 파 급효과 조사· 분석	제23조(기후영향 ·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 한 조사·연구 ·개발 등) ① 정부는 기후영 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 위험 평가, 기후 회복력 강화 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 진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취 약실태, 기후 위험 및 사회 적·경제적 파 급효과 조사· 분석	②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민 간단체 등이 기 후위기 적응 교 육·홍보 등의 활 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 다. 제23조(기후영향 ·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 한 조사·연구 ·개발 등) ① 정부는 기후영 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 위험 평가, 기후 회복력 강화 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취 약실태, 기후 위험 및 사회 적·경제적 파 급효과 조사· 분석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2.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3.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 4. 그 밖에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3.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 4. 그 밖에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개발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3.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 4. 그 밖에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개발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3.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 4. 그 밖에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이자의원안 제17조, 차지호·조지연의원안 제21조 및 김소희의원안 제22조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지연의원안 제22조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진 및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임이자의원안 제18조, 차지호의원안 제22조 및 김소희·조지연의원안 제23조는 기후위기 취약실태, 기후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의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평가 방법론·도구 개발 관련 4개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기후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	- 정부가 연구·개발사업 추진		
- 사업내용: .기후위기 취약실태, 기후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조사·분석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			

이상의 내용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기후위기 적응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한편, 4개 제정안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 보급’ 조문과 조지연 의원안의 ‘기후위기 적응 교육·홍보 등’ 조문은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각 호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¹⁸⁾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회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등 적응역량 및 기후 회복력 증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등 적응역량 및 기후 회복력 증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등 적응역량 및 기후 회복력 증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적응산업 육성 등 적응역량 및 기후 회복력 증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대통령령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대통령령으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18) 제00조(기후위기 적응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정	제2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정	제2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이자의원안 제19조, 차지호의원안 제23조·제24조 및 김소희·조지연의원안 제24조·제25조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한편, 임이자의원안은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한 반면 차지호·김소희·조지연의원안은 지정과 지정취소를 각각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지정과 지정취소는 그 내용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제20조(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연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그 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연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그 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연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그 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연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그 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26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27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27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이자의원안 제20조, 차지호의원안 제25조 및 김소희·조지연 의원안 제26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연구·기술개발·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임이자의원안 제21조, 차지호의원안 제26조 및 김소희·조지연 의원안 제27조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권한 위임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차. 부칙

임이자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김소희의원안	조지연의원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51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통합 플랫폼”을 각각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통합 플랫폼”을 각각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체계”로 한다.

4개 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차지호·조지연의원안 부칙 제2조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적응정보통합플랫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 제11조에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 제10조에서 국가기후위기정보 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짐.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중 유사·중복 조항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시행중인 계획 및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36